##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30. 2009고단1942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주진철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(유한) 정평 담당 변호사 유경재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